

업주는 여성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하여, 여성들은 진통제를 먹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들은 업주의 심한 다이어트 강요, 생리 시 성매매강요 등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 자신들의 모습이 짐승처럼 느껴져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업주는 ㉔형사(J집결지의 관할 경찰서 형사)에게 뇌물제공 및 성상납 등을 하여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는 단속 시 미리 업주에게 연락을 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㉔형사는 업주가 업소에 새로운 여성을 데려올 때 신원조회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성매매피해여성 7명은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2. 지원과정

성매매피해여성 7명은 J집결지에서 긴급 구조된 후 조사동행을 지원하였던 '열린 상담소'에서 2004년 〇〇월 본 센터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받았다.

(1) 형사사건 지원 내용

1) 업주 ㉔에 대해

2004년 〇〇월 신고를 받은 〇〇경찰서에서 현장 출동하여 업주 ㉔와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고, 업주는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긴급체포 되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와 업주 남편 ㉕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다.

본 센터는 내담자 7명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수사진행을 도왔으며 경찰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감지기센서 2개와 감지기스피커 2개를 압수하였다.

2004년 〇〇월 업주 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감금, 유희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〇〇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결정을 받았다. 성매매피해여성 7명 모두는 유희행위등방지법위반에 대하여 〇〇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센터에서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 ㉔에 대한 신고서 제출 및 결과

2004년 〇〇월 센터는 성매매피해여성들로부터 ㉔형사(J집결지의 관할 경찰서 형사)가 업주의 영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소 측의 향응제공과 성 상납 등 '뇌물성 서비스'를 받은 것을 밝혀내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는 〇〇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고, 〇〇지방경찰청은 '위 ㉔형사가 파면조치 및 형사 입건되어 〇〇지검 〇〇지청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처리결과통지서를 센터에 보내왔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원내용

본 센터는 2004년 〇〇월 성매매방지법제정과 성매매방지대책의 추진에 발맞춰 소속 법률지원단(단장 이명숙 변호사)을 주축으로 J집결지에서 업주로부터 성매매강요 등을 당한 성매매피해여성 7명에 대하여 집단으로 '업주는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과 '성매매를 전제를 한 선불금은 빚이 아니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단장 : 이명숙) 소속 변호인 5인 이은희(주 변호사), 권정순, 류관석, 문성근, 조인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센터와 법률지원단의 노력의 결실로 2004년 〇〇월 〇〇지방법원에서는 업주 ㉔가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업주 ㉔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 이 판결에 대한 본 센터의 논평

재판부에서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강요, 폭행, 감금 등의 혐의가 인정된 업주에게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채권은 무효라는 것과,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업주들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본 센터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해당 재판부는 업주의 현실적 파산상태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각 5,000만원에서 각 1,000만원으로 낮추어 조정하였다. 업주에 대한 재판부의 이러한 배려는 대부분의 성매매 업주들이 피해여성을 고용해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다. 본 사건의 해당 업주 또한 7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평균 1년 동안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며 번 돈의 80%를 갈취하였으며 나머지 20% 또한 제대로 계산해 준 적이 없었다. 성매매는 물론, 심지어 피해여성들에게 억지로 술 매상까지 올리도록 강요하였던 당시의 영업상황을 고려하면 이득의 편취정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본 센터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 성매매여성들의 피해를 법정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누차 밝혔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배상액을 낮춰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주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법정에서 철저히 밝힐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업주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이은희 변호사 (법률지원단)

경기도 J집결지에서 업주로부터 성매매강요 등을 당한 성매매피해여성 7명에 대하여 집단으로 '업주는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과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빚이 아니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원내용

(1) 기자회견

2004년 00월 00일 성매매방지법제정과 성매매방지대책의 추진에 발맞추어 소속 법률지원단(단장 이명숙 변호사)을 주축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또는 전 업소에서 진 빚을 업주가 대신 갚아준 경우 등이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무효(민법 제103조, 제 746조, 구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성매매 된 여성이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우리 사회에 그녀들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2) 소장제출

2004년 00월 00일 법률지원단은 소장을 제출하였고, 주요한 입증방법으로서 센터에서 작성한 성매매피해여성 7명의 진술서들이 첨부되어 들어갔다.

(3) 업주의 답변서 제출

2004년 00월 00일 업주 @는 성매매피해여성 7명의 현금차용증 등을 제시하며 불법행위 및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소장의 내용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

2004년 00월 00일 위 소송의 주변호사인 이은희 변호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센터가 조사동석하며 진행한 형사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유리한 증거제출

2004년 00월 00일 이은희 변호사는 송부 받은 형사사건기록에 대해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 같은 해 00월 센터는 증거를 추가하여 센터에서 여성들과 상담한 개별상담기록, 담당상담원의 상담소견서와 심리상담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인정과 선불금채권무효의 심증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향후진행 상황 및 지원방향

(1) 업주 ㉠에 대해

1) 소송비용 확정

(판결 중의 소송비용의 재판에는 이론상 부담할 액수까지 정할 수 있으나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실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절차가 필요하다)

① 2005. 00. 00. 소송비용액확정신청(소송비용이 재판에서 부담할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그 액수를 정하기 위해 제1심 수소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2005. 00. 00. 결정(금 5,384,800원)(소송비용액은 법원에서 결정으로 재판하

고 소송비용액은 법원사무관이 계산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금 5,384,800원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업주 ㉠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업주 ㉠)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 진실함을 선서한다.}

① 2005. 00. 00. 재산관계명시신청

② 2005. 00. 00. 결정

{법원이 채무자(업주 ㉠)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 진실함을 선서하게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다.}

③ 2005. 00. 00. 재산명시기일

{채무자(업주 ㉠)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진실함을 선서하는 날이다.}

* J집결지 업주 ㉠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업주 ㉠에 대하여 향후 가능한 조치

①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능성

(업주 ㉠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효성이나 금액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② 파산신청

파산신청은 채무자(업주 ㉠)가 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성매매피해여성 7명)도 가능하므로 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2) ㉔ 형사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 결과 및 향후지원 방향

1) 사건 내역

- ① 2004. 00. 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공소제기(2004고단0000 공문서위조 등)
- ② 2004. 00. 00. 유죄 선고(징역 1년)
- ③ 2004. 00. 00. 피고인 항소(2004노0000 공문서위조 등)
- ④ 2004. 00. 00. 원심판결 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 국가배상 청구의 가능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국가배상법 제2조). ㉔형사는 경찰공무원이므로 국가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2.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김희재 상담원

1. 사건개요

성매매피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D파이낸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연관된 내담자가 여러 명인 것을 알고, 이들 외에 더 많은 피해여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모아 법률지원을 시작하였다.

(1) 이00, 니00 사건 경과

- 1) 00 집결지 업소 업주는 성매매피해여성 이00, 니00에게 D파이낸스 ㉞로부터 선불금을 받게 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 2) 이 두 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은 본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중에 2004년 00월 D파이낸스(㉞)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하여 피의자로 조사 받았고, 2004년 00월 사기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최00 사건 경과

- 1) 성매매피해여성 최00는 00의 집결지 업소 업주로부터 D파이낸스의 ㉞을 소개받아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 2) 최00는 본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후 2004년 00월 D파이낸스 ㉞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하여 00지검에서 피의자로 조사 받았으나, 2004년 00월 ㉞와 대질 과정에서 ㉞가 고소를 취하하고 돌아갔다.

(3) 신00 사건 경과

- 1) OO 집결지 업주(㉡)는 성매매피해여성 신OO에게 D파이낸스의 ㉢로부터 선불금을 받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 2) 2004년 3월 D파이낸스 ㉢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하였는데 2004년 OO월 D파이낸스 ㉢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4) 한OO 사건 경과

OO집결지 업주(㉡)는 성매매피해여성 한OO에게 D파이낸스의 ㉢, ㉣를 소개하였다. ㉢, ㉣는 피해여성 한OO을 OO집결지 업소에 알선한 후 성매매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500만원을 업주(㉡)에게 주고 한OO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지원과정

(1) 형사사건 지원 내용

피해자 5명 중 4명이 D파이낸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동안, 김OO이 업주와 D파이낸스를 성매매알선으로 고소하였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D파이낸스 ㉢의 차량을 압수 수색한 결과 사고자 명단, 각서, 차용증 등 업주와 결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D파이낸스에서 근무했던 ㉣의 제보전화로 이들의 영업형태가 발각 되었다.

이들 D파이낸스(㉢, ㉣)는 'D파이낸스'라는 대부업을 동사무소에 등록한 후 OO집결지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선불금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업주들이 '선불금무효' 규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악용한 D파이낸스는 성매매집결지 업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여성들에게 선불

금을 마치 정당하게 대출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각종 차용증에 높은 수수료(1,000만원에 이자30만원)를 빚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선불금은 D파이낸스가 아닌 업주가 주는 돈으로, 업주들은 다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업주는 선불금을 명목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인권유린과 임금착취를 하였고, 피해여성이 도망갈 경우 업주들을 대신하여 D파이낸스가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여성들을 고소하였다. 도주한 여성들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드는 수수료, 소송비용과 이들을 찾는 데 드는 비용 등은 업주가 D파이낸스에 지불한다. 이 비용은 다시 고스란히 성매매피해여성의 빚으로 올려, 업주는 성매매피해여성에게 다시 이를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업주들과 결탁하여 피해여성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업주가 선불금을 내준 것이며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서류 대행만 한 것이다.

한편 피소당한 피해자 4명은 상담원 동석으로 조사를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고소인들이 취하하여 사건 종결되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지원 내용

최근 성매매구조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제공되는 선불금은 그 출처가 등록되어 있는 제3채권이거나 사채업자를 통한 대출금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 선불금은 제3채권자와 성매매피해여성 간의 계약상 채무가 되어, 그 채무가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피해여성의 신고나 고소 등으로 처벌 받는 다 하여도, 선불금채무는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것이 되므로, 업주는 제3채권자의 이름으로 선불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D파이낸스와 불법알선업자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고스란히 그 빚을 떠안게 되어 다시 성매매업소에 다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은 김인숙변호사를 주변호사로 하고 2004년 OO월 OO

일 성매매피해여성 5인을 원고로 하여 D파이낸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경영한 ㉠(피고1)와 ㉡(피고2)를 상대로 선불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다.

[소송 변호인단]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 주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권정순, 김삼화, 김영태, 김재련, 김정균, 도형욱, 최직렬, 류관석, 문성근, 박병권, 성민섭, 송영일, 양정숙, 이명숙, 이은희, 이홍우, 정호연, 조인섭, 홍순기)

1) ㉠와 ㉡의 답변서 제출

㉡는 2004년 00월 00일 위 소장에 대해 ‘원고 이00, 나00이 돈을 받고 도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 ‘피고들의 대부는 정상적인 상거래였으며 업무처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본 센터 법률지원단의 준비서면제출

본 센터 법률지원단은 2004년 00월 00일 위 답변서에 대해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부담하게 된 선불금을 갚기 위해 ㉠과 ㉡에게 돈을 빌렸고, 이00, 나00이 ㉡에 의해 사기로 고소된 것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 ㉡와 성매매피해여성들 간에 맺은 대여금 약정은 ㉠, ㉡가 성매매업소 업주와 협력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지불한 선불금이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였다.

3) ㉠, ㉡의 준비서면 제출과 이에 대한 법률지원단의 준비서면 제출

㉠는 2005년 00월 00일 ‘업무는 ㉠가 했으나, 권한은 ㉡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는 2005년 00월 00일 ‘보증인으로 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다 변제받았으므로 성매매여성들의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2005년 00월 00일 ‘㉠, ㉡는 각자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고, D파이낸스의 대표자로 권한 있는 자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4) 본 센터와 법률지원단의 회의

2005년 00월 변론준비기일에 D파이낸스 ㉠와 ㉡가 ‘보증인으로부터 모든 돈을 변제받아 받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장은 “D파이낸스 ㉠와 ㉡가 이미 보증인(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여성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끝내면 어떡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계속하고자 한다면 재판장은 “확인의 이익(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피해여성들에게 주는 이익)과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센터의 변호사측에 요청하였다.

재판장의 요청을 받은 김인숙 변호사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본 센터 법률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였고, 본 센터와 법률지원단은 D파이낸스 ㉠와 ㉡로부터 받은 금원은 성매매강요의 수단으로 된 선불금으로, 선불금채무는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마지막 준비서면에 사실관계의 종합과 확인의 이익을 주장하기로 하였다.

5) 법률지원단의 마지막 준비서면 제출

김인숙 변호사를 주축으로 2005. 00. 00.자로 ㉠와 ㉡가 보증인들(업주들)로부터 위 선불금을 실제로 변제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위 ㉠와 ㉡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이번 소송만을 면해 보고자 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으며, 소송 후에 다시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청구해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확인이익의 존재)는 내용의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6) 판결 선고

00지방법원은 2005년 00월 00일 센터와 법률지원단의 노력과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3. 이 판결에 대한 본 센터의 논평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

약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협력한 피고들이 영업상 관계있는 성매매를 하는 자(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갚지 않을 수 없는 선불금채무의 변제자금을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대여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를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협력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영업상 관계있는 성매매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선불금 등의 변제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 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과거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 대한 선불금 빚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에 대한 선불금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업주들뿐만 아니라 이에 협력한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여성들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정을 살펴 힘을 실어주고, 업주들과 이에 협력한 사채업자들에게 재판부가 성매매근절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D파이낸스 사건을 진행한 소감

김인숙 변호사 (법률지원단)

D파이낸스 사건의 경우 제일 먼저 고민을 한 것은 'D파이낸스' 자체를 피고로 할 수 없을 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D파이낸스가 법인의 형태가 아니고, 'D파이낸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성된 각자가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업자 개인들을 피고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유감스러웠다.

재판진행과정 중에는 피고들이 원고 4명 가운데 2명의 경우에는 채무가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2명의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하다가 종국에는 4명 모두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고 자인하여 당황하였다. 내부적으로 피고들은 불리한 판결을 받아서 선례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판사님에게 구두로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 및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 판결은 비록 업주들이 내세우는 사금융 자체를 피고로 삼지는 못하였으나, 비록 업주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업주와 성매매피해자 사이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업주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업주들의 선불금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OO 상담원을 비롯한 다시함께센터 여러분의 노고를 옆에서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늘 애쓰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3. 성매매피해여성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불금 채권무효

정호연 변호사(법률지원단), 이지숙 사무국장

1. 상담내용

김OO은 업소를 전전하며 결근비, 지각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2002년 OO월 선불금 1,500만원을 받고 A룸살롱에 들어가 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 A룸살롱 업주는 김OO에게 2차 강요, 매상강요 뿐 아니라 “선불금이 많다”며 새로운 업소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김OO은 갈수록 심해지는 업주, 마담의 횡포와 늘어나는 빚 때문에 새로운 업소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OO은 같은 업소에서 일하던 강OO의 선불금 1,000만원을 보증 썼다가 강OO이 도망하면서 김OO의 빚이 되어 버려 총 2,500만원으로 빚이 늘어났다. 빚만 있고 생활비는 없는 상황에서 급한 대로 김OO은 A룸살롱의 업주로부터 100만원의 선불금을 또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A룸살롱에서의 선불금은 총 2,600만원이 되었다.

김OO은 2002년 OO월 말경 경기도 소재 B룸살롱에서 선불금 1,500만원을 받아 그 전에 일하던 A룸살롱의 선불금 총 2,600만원 중 1,5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B룸살롱에서 일한 지 3일째 되는 날 A룸살롱 업주 ㉑는 김OO에게 선불금으로 준 금액 중 나머지 1,100만원을 갚으라며 욕하며 협박을 하였고, 위 상황을 본 B룸살롱 업주 역시 선불금을 갚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김OO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A룸살롱 업주㉑, B룸살롱 업주㉒와 마담㉓ 등은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김

OO에게 신체포기각서, 어음, 차용증을 세 차례 작성하게 하였고, “돈을 갚지 못하면 3중(집결지)으로 팔아넘기겠다”는 위협과 협박은 물론 실제로 집결지로 팔아넘기려 하였다. 그러나 의도하던 대로 잘 되지 않자 김OO의 친구 박OO을 협박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때까지 김OO을 총 4일간 감금하였다. 김OO을 풀어준 후 2003년 OO월경 A룸살롱, 2003년 OO월경 B룸살롱 업주는 김OO의 연대보증인 박OO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A룸살롱 업주 ㉑는 연대보증인 박OO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하였고, B룸살롱 업주 ㉒는 김OO과 박OO을 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하면서 김OO을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다.

박OO은 A룸살롱 업주 ㉑가 2003년 OO월 OO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2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2003년 OO월 본 센터에 상담 의뢰하였다.

2. 상담지원 및 형사사건 지원내용

2003년 OO월 변론종결 당일 상담을 요청한 박OO에게 센터는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률지원단 소속 정호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변론을 시작하였다.

센터 상담원이 동석하여 재판을 받고, 정호연 변호사가 변론하면서 탄원서, 상담 소견서, 판례 등의 서류를 제출 하는 등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며 사건을 진행하였다.

2003년 OO월 B룸살롱 업주㉒는 약정금 1,500만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3일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OO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김OO은 OO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룸살롱 업주 ㉑와 B룸살롱 업주 ㉒가 공모하여 2,600만원에 김OO을 집결지에 인신매매하려다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를 진술하였고, 위 사실에 대해 센터 상담원과 김OO은 같은 경찰서 강력계에 두 업주①과 업주②등에 대해 (구)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감금, 폭행 등으로 인지수사를 요청하였다.

본 센터 상담원은 김OO을 위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동행하였고, 검사의 처분과 재판부의 재판을 돕기 위해 상담소견서, 의견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오히려 김OO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 이 사건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였으나, 센터의 지속적인 개입과 법률사무소 청지의 도움으로 사건은 2004년 OO월 피해여성 김OO은 사기 '혐의없음'처분, A룸살롱 업주 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협박)으로 기소유예, B룸살롱 업주 ②는 사기로 기소유예, 마담 ③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감금과 협박에 가담한 ④와 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으로 기소유예, ⑥와 성명불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으로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왔다.

3. 민사사건 지원

(1) A룸살롱 업주①가 김OO과 연대보증인 박OO을 상대로 1,100만원 지급명령청구

1) A룸살롱 업주①의 지급명령청구와 박OO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의 제출
2003년 OO월경 A업주 ①는 김OO의 선불금 1,1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던 박OO을 피고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박OO이 강압적인 차용증서 작성과정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업주 ①의 준비서면 제출

①는 2003년 OO월 단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서도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박OO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차용증서와 약속

어음, 공증증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변론종결에 대한 본 센터의 변론재개신청

2003년 OO월 재판에서 변론종결이 되었다. 이에 박OO은 다시함께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고, 같은 날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후 정호연변호사에게 소송수임을 의뢰하여 소송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4) 정호연 변호사 준비서면 제출

2003년 OO월 '박OO의 연대보증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과 설사 강박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김OO이 A룸살롱 업주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현금보관증과 '확인서(3종으로 가도 괜찮다는 내용)'를 제출하였다.

5) 성매매관련 선불금채권무효라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본 센터 상담원 윤OO의 상담소견서 등 제출

센터는 위 선불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것이 아니라, 선불금채권 자체가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호연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2004년 OO월 김OO이 A룸살롱 업주①로부터 빌린 돈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상담원 윤OO의 상담소견서, 김OO의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하였고, 2004년 OO월 증인진술서(업주 ①의 업소에서 김OO과 함께 근무한 종업원 모OO의 진술)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6) 성매매 피해여성 김OO에 대한 정호연변호사의 증인신문

2004년 OO월 정호연변호사는 A룸살롱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온 김OO을 증인 신문하여 진실을 밝혔다. A룸살롱 업주①는 김OO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주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강압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등의 거짓 내용의 준비서면과 김OO과 같이 일한 3인(업주①, 마담③, 조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및 준비서면 제출

2004년 00월 법원에 A룸살롱 업주①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일체를 보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5년 00월 김OO의 주채무는 불법원인을 이유로 무효이며, 박OO의 연대보증은 A룸살롱 업주①측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는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업주①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협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의 형사사건기록일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8) 판결선고

OO법원에서는 2005년 00월 A룸살롱의 업주 ①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고, 연대보증인 박OO에게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2) B룸살롱 업주②가 김OO과 연대보증인 박OO을 상대로 약정금 1,500만원 지급청구소제기

1) B룸살롱 업주 ②의 소장 제출

2003년 00월 B룸살롱 업주②가 박OO과 김OO을 상대로 1,500만원 약정금청구의 소장을 OO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업주②측이 2002년 00월 김OO을 감금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 박OO이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2003년 00월 B룸살롱 업주②가 청구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해 박OO과 김OO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3) 정호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이의신청서와 준비서면 제출

정호연변호사는 2003년 00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김OO이 B룸살롱 업주②로부터 받은 1,500만원은 2차(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과 박OO의 연대보증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내용의 2004. 00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OO의 진술서, 상담원 윤OO의 상담소견서, 김OO이 차용증을 쓸 당시 같이 있었던 모OO 증인진술서, 신체포기각서와 김OO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4) B룸살롱 업주③의 준비서면 제출

B룸살롱 업주③는 2차(성매매)는 전적으로 아가씨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것, 김OO이 하루만 일하였다는 것과 박OO이 스스로 연대보증을 썼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4. 00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5) 판결선고

OO지방법원은 2004년 00월 B룸살롱 업주③에게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박OO과 김OO이 승소하였다.

6) B룸살롱 업주 ④의 항소 및 항소장각하명령

B룸살롱 업주④는 2005년 00월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항소기간이 지나 2005년 00월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업주들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 선불금 채권 무효이므로 성매매피해여성이나 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대표적인 법률지원 사례의 향후 지원 방안

- 1. 성매매피해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 조인섭 변호사
... 송문욱 상담원
- 2. 해외에 송출된 한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김명애 상담원
- 3. 성매매 피해여성의 질환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 이성환 변호사
... 윤희숙 상담원

VI. 대표적인 법률지원 사례의 향후 지원 방안

1. 성매매피해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송문옥 상담원

1. 사건 개요

(1) 사례 지원 과정

2004년 00월경 H섬 00클럽에서 관광객들과 주민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섬에서 나올 기회를 엿보아 탈출에 성공한 민00은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민00에 의해 4년 동안 H섬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한 번도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00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와 함께 섬으로 들어가 양00, 옥00과 진00을 긴급구조하게 되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업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감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성매매피해사실 조사가 끝난 여성들은 본 센터로 이동·쉼터로 연계되었다. 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활교육에 들어갔다.

한편, 센터에서는 섬에서 긴급구조된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H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케 한 후 검찰청에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비리 경찰들(H섬 소재 출장 파출소 책임자, 해양경찰서 책

입자)을 고발하여 OO지방경찰청 OO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20명의 법률지원단(권정순, 김삼화, 김영태, 김인숙, 김재련, 김정균, 도형욱, 류관석, 문성근, 박병권, 성민섭, 송영일, 양정숙, 이명숙, 이은희, 이홍우, 정호연, 조인섭, 최직렬, 홍순기 변호사가나다순)에게 의뢰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도 가져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종착역이자 감옥인 '섬'에 대한 심각성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서울OO지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업주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부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감금부분에서는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 비리 경찰들(H섬 소재 출장 파출소 책임자, 해양경찰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는 인정이 되나 업주들과의 유착, 뇌물 수수 및 성상납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감금부분에 대해서 본 센터측과 피고들측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다시함께센터에서는 담당 재판부에 피해여성들이 작성한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수기집, 섬에서 갇혀 살던 동안 겪었던 사실들에 대한 탄원서, 헛터생활 상담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와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조인섭변호사와 본 센터 상담원이 직접 H섬을 방문하여 지리적 특수성, 육로와의 출입 통로와 업소주변 환경 등에 대해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2) 향후 지원 방안

현재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 중에 있다. 아직 감금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당사자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왜 감금이 성립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립, 자활의 굳은 의지를 갖고 한걸음씩 자아성취를 위해 도약하려고 애쓰고 있다.

'섬'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도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에 더욱 경각심을 불

러일으킬 것이다. 본 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감금을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H섬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 대해서도 일제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 상담을 지원하며 느낀 점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은 편안하며 안전한 곳이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이 세상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안전하지 못한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 더구나 그 곳은 해마다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지로 유명한 섬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린다. 설마라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있어서 '섬'은 인신매매의 최후 종착지이자 감옥이다. 이곳에서는 선불금이 많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있어 '섬'은 감옥이고, 자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 죄인, 업주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재판장이며, 섬주민들은 죄인을 감시하는 교도관인 것이다.

그 곳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온갖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경찰관계 공무원들이, 피해여성들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불법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유착되어, 이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뇌물 및 성상납까지 받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국가에 묻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다. 관계공무원들은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감금사실조차 믿어주지 않

왔다. 심지어는 국가기관 대변인 변호사는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였다. 정말 어이없고 분노마저 느끼게 하였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센터와 성매매피해여성 당사자들은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켜 볼 것이다. 또한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인섭 변호사님 이외 19분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님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시함께센터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것이다.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며

조인섭 변호사 (법률지원단)

H도는 OO까지 5시간동안 차를 타고 가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을 들어가야 있는 섬이었다. 2005. OO월 제가 갔을 때는, 휴가철로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드나들었는데, 선착장에는 해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온갖 파라솔과 횃집들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곳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고, 휴가철에 관광의 목적으로나 찾을 법한 곳이었지만,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최후의 종착지'였고, 평화롭다기보다 그곳의 주민들로부터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곳이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그곳 '섬'에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함은 물론 업주들의 개인 노비와 같은 생활을 했다. 그곳의 업주들은 지역 유지로 경찰들을 모두 잘 알고 있었기에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그곳의 경찰들에게는 도움도 청하지 못했고, 1366에 전화를 해 '구출해 달라'고도 했지만 '미성년자가 아니고, 섬에 있다고 하면 구출해주지 못 한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서울의 경찰청에도 다른 이들을 통해 신고를 해보았지만 '관할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으며, 언론에도 호소를 해보았지만 그 길조차 막혀버렸다. 이들은 2004. OO월 겨우 그곳에서 탈출을 해서 2004. OO. OO. 다시함께센터와 법률지원단과 함께 업주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그곳의 경찰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

소송을 하며 우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무지, 외면 등과 싸워야 했다. 일단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들은 '① 성매매를 했는지, ② 그 성매매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③ 섬에서 감금이 있었는지, ④ 그런 사실을 경찰들이 모두 알면서도 업주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외면한 것인지'였다.

처음에는 '성매매의 증거가 어디 있냐', '횃수를 특정해라'라고 했고, 그 증거를 제시하자 이번에는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걸 가지고 왜 책임을 지라고 하냐고 나왔

다. 섬 안을 돌아다녔다고 하며 감금이 아니라고 했고, 해양경찰서는 업소와 불과 5 내지 10미터 거리에 있었고, 육경은 업소와 불과 30내지 40미터의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만 할 뿐이었다. 섬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이 사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로 옆에 있는 경찰들조차 보호 해주지 않는, 누군가의 쾌락을 위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것은 법조인들조차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H도의 육경과 해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절차기록과, 업주에 대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감금 등의 사항을 조사한 형사기록,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이 1366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성매매피해여성의 지인이 경찰에도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기자에게도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한 받아 제출했고, 원고들의 인증서, 그리고 원고와 같이 H도에서 생활했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진술서도 인증을 받아 제출했다.

성매매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과 선불금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 것이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는지 여부와 감금되었는지 하는 부분, 그런 상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제 소송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그간의 인식과 편견을 바꾸는 작업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H도라는 그 좁은 섬에서 아침, 저녁 오가는 배를 보며 언제나 육지를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을 피해여성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했던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의 그런 노력이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섬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그 여성들에게 조그만 등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2. 해외에 송출된 한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김명애 상담원

1. 사건개요

아버지 사업부도로 피부관리샵에서 일하게 된 이OO은 잡지와 피부관리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부로 하는 피부 관리'를 알게 되었고, '일본취업'이라고 적혀 있는 정보지를 통해 소개업자①를 만나게 되었다.

소개업자①는 피부 관리를 문의하는 이OO에게 "피부 관리하는 곳을 소개하겠다."고 하며 경비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이OO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의 친구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일본으로 갔다.

소개업자①가 소개한 ②는 일본 공항에서 이OO을 만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가져갔다. 이OO이 ②를 따라 가게 된 곳은 한국의 룬살롱 같은 곳이었고, ②는 "집에 가겠다."고 하는 이OO에게 "업소까지 이OO을 데리고 온 경비로 300만원을 당장 내놓고 가라."며 협박하였다. ②는 이OO을 C룸살롱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C룸살롱 업주③로부터 돈을 받아 갔다.

C룸살롱 업주③는 이OO에게 일당 1만3천 엔을 주기로 하면서 월근비 3~5만 엔, 지각비 1천 엔을 받아갔고 한달에 8회 손님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데려오지 못하면 1회당 5만 엔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C룸살롱 건물 3, 4층에 있는 숙소에서 아가씨 15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출입문은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고 영업이 끝난 후에는 업소의 매니저가 숙소로 들어와 아가씨들이 있는지 체크한 후 숙소 밖에서 문을 잠그는 등 감금하였다.

C룸살롱이 있는 건물자체가 일본의 조직폭력단 야쿠자 소유의 건물이었고, 업소

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이OO은 감시, 감금당하며 일하였다. C룸살롱 업주㉔는 이OO을 협박, 폭행을 일삼으며 일하도록 강요했고, 손님과 강제로 2차를 나가게 했다.

이OO은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경찰이 오면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업주 ㉔는 경찰이 왔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고 업소 문을 모두 닫거나 아가씨들을 호텔로 미리 보냈기 때문에 이OO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C룸살롱 업주㉔는 이OO의 의사와 상관없이 코와 눈을 성형시켰고, 성형수술비를 빚으로 올렸다. 이OO은 당시 불법시술의 부작용 때문에 코는 일본에서 1주일 만에 재수술을 받았고 눈은 위아래가 붙어 눈물샘 부근에 고름이 고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본 센터의 도움으로 재수술 받았다.

이OO이 3개월 여행비자로 들어 간 것을 알기 때문에 업주㉔는 이OO에게 감시인을 붙여 한국에 갔다 오게 하여 비자를 연장시켰고, 아버지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결혼비자를 만들지 않으면 창녀촌(집결지)으로 팔아버린다.”는 말에 겁먹은 이OO을 강제로 일본인(51세 장애인이었음)과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업주㉔는 이OO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까봐 업주㉔의 대리인을 시켜 이OO을 감시하게 한 후 혼인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OO이 C룸살롱에서 일하는 동안 업주 ㉔로부터 일한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여 같이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안마, 마사지 등을 해주면서 용돈 받은 것을 갖고 생활하였음에도 3개월 후 업주㉔는 이OO이 2800만원 빚이 있다며 한국에서 공증서를 작성해 올 것을 강요했다.

업주㉔는 이OO에게 “도망 가봐라. 한국에 돈만 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냥 해결사 시킬 꺼다.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며 협박하였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OO에게 앞 얼굴, 옆얼굴, 화장을 한 모습, 화장을 안한 모습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고 이OO이 도망갈 시 이 사진을 생활정보지에 광고내서 찾겠다고 협박했다.

결혼비자를 가져오라는 ㉔의 지시에 한국으로 가게 된 이OO은 죽을 각오를 하고 2003년 OO월 OO일 언론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지원과정

이OO은 언론과 법률사무소 청지의 도움으로 소개업자㉕와 업주㉔에 대해 조사를 받고 1심 재판 중 본 센터에 연계되었다.

(1) 형사사건 지원 내용

2003년 OO월 언론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이OO은 소개업자㉕와 업주㉔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를 찾아 왔다. 당시 이OO은 재판부가 일본에서 룸살롱업주로부터 억울하게 당했다고 한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2004년 OO월 일본에서 같이 일하던 강OO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강OO을 설득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한 후 강OO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하고, 이OO의 피해 진술서, 이OO의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피해자 박OO, 성OO의 피해 진술서, 본 센터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04년 OO월 재판부에서는 이OO이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그때까지 해외취업이나 술집여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일본 룸살롱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던 점, 소개업자㉕의 소개로 만난 ㉖가 공항에서 5시간 떨어진 곳에 소개하며 사전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가져갔던 점, 일본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이OO에 대해 어떤 희망이나 구체적인 협박, 폭행의 위협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녀매매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소개업자㉕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업주㉔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혼인무효소송 지원내용

소송 변호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사무소 청지 이성환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요코 요시다 변호사

2005년 00월 이성환 변호사가 00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업주 ㉔로부터 본인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가 왔다. 그리고 소개업자 ㉑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이성환 변호사 측은 소개업자 ㉑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소개업자 ㉑의 주소를 말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본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05년 0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이성환 변호사 측은 혼인무효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일본 법정에서는 법적 남편으로 되어 있는 다00의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자 본 센터는 일본에서 이00 사건을 도와 줄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다.

2005년 00월 요코 요시다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00의 혼인무효소송을 일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한국에서 소제기 한 것은 취하였다. 이00의 진술서,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일어로 번역하여 일본으로 보내 현재 일본 법정에 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진행 중이며 이 과정 중 업주 ㉔의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04년 이00과 다00이 합의이혼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향후지원과제

해외로 송출된 한국인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다 보면, 업소가 해외에 있다는 점과 한국인 업주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처벌하지 못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게 해외업소를 소개한 알선업자를 처벌

하는데 그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업주 처벌을 적극 요청 하였을 때에도,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업주가 입국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업주를 직접 유인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외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기고만장해져 여성들에게 더 악랄하게 대하게 된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었으나 도망 나오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할 시 본 센터는 그곳에서 여성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여성을 도와 줄 사람들을 찾아, 안전하게 성매매피해여성을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방법밖에 찾을 수 없었다.

이런 현실에 본 센터는 각 해당국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안전과 한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현재 해외에서 온 성매매피해여성 사건 중 일본에서의 피해자 중 3명에 대하여 일본 단체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과 합하여 이00에 이어 일본으로 인신매매되어 일하다 본 센터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나오게 된 강00, 일본에서 나와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한 황00의 사건을 일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이00

C롬살롱 단속 요구 및 업주 ㉔에 대해 일본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의뢰. 현재 혼인무효소송 역시 일본에서 진행 중

2) 강00

일본으로 인신매매되어 본 센터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나온 강00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강00의 업주는 인터넷에 강00의 얼굴, 한국의 주소, 강00의 친연니들 주소 등이 나오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여 언론사에서 바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오히려 업주가 강00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에 있다.

업주는 일본에서 안마시술소와 전화방(성구매자가 호텔에서 업소로 전화하여 여성을 불러 성매매 하는 것)을 겸업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알선업자만 처벌되고,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고 관리한 업주의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아 업소 단속 및 업주를 상대로 수사의뢰하였다.

3) 황OO

갑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도망 나온 황OO은 한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로 업주로부터 협박이 시작되었고 이에 겁먹은 황OO은 본 센터로 상담을 의뢰하였다.

현재 황OO의 사건은 경찰청 117센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본 센터를 주축으로 일본 시민단체, 일본 변호사가 동참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3. 성매매 피해여성의 질환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윤희숙 상담원

1. 질환책임 집단 소송의 의의

본 센터를 내방하는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산부인과 질환 및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질환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고, 후유증 또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센터에서 접한 사례와 2004년 OO월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부인과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이루어지고, 또한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행위임이 일부 밝혀지게 되었다.

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하는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경우 업주에 의한 잦은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질염, 골반염 등의 부인과 질환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환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주들은 이들이 매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성매매의 강요에 의해, 이 여성들의 건강상태와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산업의 구조 안에서 업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착취하여 매우 큰 이득을 얻지만 강요된 성매매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는 결국 성매매피해여성 스스로의 책임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집단소송에는 A집결지에서 약 3년 정도 일을 하고 자궁경부암 말기상태인 문OO(30대), B집결지에서 약3년 정도 일을 하고 상피경부내암으로 자궁적출을 한 김OO(30대), 약 4년 정도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였고 중증골반염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성매매업소에서 3년간 일하고 골반염을 앓고 있는 ㉡(20대)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이러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앓고 있는 여러 질환 중 우선 부인과 질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2. 향후 계획

아울러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뿐 아니라, 불법의료시술을 하는 속칭 “주사이모”와 실제의 질환과 다르게 보건증을 발급한 사례를 찾아내어 민·형사상의 소송 또한 진행할 예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다시함께센터와 소속 법률지원단·의료지원단은 정부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각종 질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의 단순한 성병관리 차원이 아니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3. 상담내용

(1) 문OO

2004년 00월 본 센터에 문OO의 친 오빠와 가족들이 방문하여 A집결지 업주의 성매매 강요로 인하여 문OO이 현재 자궁경부암말기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태이며,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A집결지 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상담을 의뢰하였다.

문OO은 2001년 00월경부터 소개업자를 통해 다방에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선불 3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업주 ㉠를 통해 따라 도착한 곳이 A집결지임을 알고

“이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지만, 업주 ㉠는 “선불을 가져갔으니 일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했다. 업주 ㉠는 문OO을 감시하며 외출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선불금을 갚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문OO은 갚은 벌금으로 등으로 늘어나는 빚에 3년여 가량 성매매집결지인 A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업주는 문OO에게 생리 시에도 솜으로 틀어막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 매상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변태적인 쇼를 강요당해야 했다. 처음에는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러한 변태적인 쇼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서 생리가 나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생리 중이 아닌데도 하혈을 하여 문OO은 병원을 가고 싶었지만 성매매 한 돈을 갈취한 업주는 병원비도 주지 않고, 진통제만 주면서 참을 것을 강요하여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

보건소 진료는 정기적으로 있었지만 염증이 있더라도 약을 준 후, ‘정상’이라고 기재하였다. 몸이 심하게 아파도 업주의 성매매 강요는 계속되었고 몸은 차츰 망가져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힘든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문OO은 손님으로 온 성OO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업주 ㉠는 성OO에게 문OO의 빚을 변제해야만 업소에서 데려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성OO 또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문OO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A집결지에서 꼭 구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업주 ㉠가 제시한 명세서의 금액 1000만원을 변제한 후 겨우 문OO을 업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문OO은 업소를 그만둔 후 계속적인 하혈과 복통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OO병원에 입원하게 된 문OO을 성OO은 지극히 간병하였다. 하지만, 성OO의 극진한 간병과 본 센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간의 힘겨운 투병생활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2005년 00월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2) 김OO

처음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 작은 장사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게 되었다. 장사를 하면서 시작된 사채 빚은 원금과 이자로 김OO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빚으로 힘들어하는 김OO을 평소에 알고 지낸 강OO이 “이렇게 힘겹게 생활하지 말고, 돈 잘 벌고 빚도 빨리 갚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에서 일을 해라”고 했다. 당장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강OO이 소개한 B집결지로 가게 되었다.

2001년 OO월경부터 약 2년 6개월가량을 성매매집결지인 OO에서 하루 평균 5명에서 ~ 8명의 손님을 상대해야만 했고, 손님에게서 받는 팁은 물론 올비(벌금)로 매일 50만원씩을 입금시켜야 했다. 몸이 아프고 지쳤지만 올비(벌금)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다.

일을 하는 동안 임시로 마련된 검진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항상 ‘어떠한 이상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약 4개월경부터 아랫배가 심하게 아파 업소 인근에 소재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다. 담당의사는 김OO에게 “골반 염이 심하니 더 이상의 성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진단을 내렸다. 진료의 결과를 받은 김OO은 업주 ㉞에게 의사의 말을 이야기 했지만, “너(김OO)는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 비실거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난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었고, 더 이상 업주의 눈치에 의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김OO은 업주 ㉞에 의해 생리 시에도 질속에 솜을 넣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해야 했다.

김OO은 몸이 아파 업소를 도망 나오고 싶었지만, B집결지 업주 ㉞는 열쇠로 숙소의 안과 밖을 잠그거나, 소파를 문 앞에 두고 지켰기 때문에 도망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다, 1년이 지났을 무렵 하혈이 너무 심하여 인근 산부인과를 찾은 결과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소견서를 업주에게 보여주며 “병원에 다녀올 테니,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 ㉞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병원으로 같이 가라며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기만 했다.

2003년 OO월 업주 ㉞는 김OO이 배가 부어오르고 아파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서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 측에서 “자궁경부상피내암인데 그 주변만 도려내면 된다.”고 하자,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김OO을 다시 업소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김OO은 아픈 몸으로 약 4개월 정도 더 일을 하여야 했다.

그러던 중 업주가 지방으로 며칠 간 사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심한 하혈’로 김OO은 도망하였고, 2004년 OO월경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었다.

김OO은 현재 ‘자궁경부상피내암’에 의해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시도를 하는 등 힘들어하고 있다.

4. 지원내용

(1) 문OO

2004년 OO월 OO일 오후 친 오빠를 포함한 가족이 센터에 내방하여 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며 사건을 의뢰 및 OO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형사지원

1) 문OO 피해 진술

본 센터 상담원이 동석한 가운데 ‘117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의 이OO 경위는 문OO이 A집결지 업소에서의 피해 진술을 받았다.

2) 업주 ㉔ 체포, 구속

센터에서는 '117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OO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OO지방경찰청은 2004년 OO월 업주 ㉔를 긴급체포, 구속하다.

3) 성매매피해여성 질환의 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

본 센터에서는 성매매와 부인과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하여 2004년 OO월 성매매피해여성 질환의 책임에 대한 집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4) 진정서 제출

본 센터에서는 A집결지 업주 ㉔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OO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 업주 처벌

2005년 OO월 업주 ㉔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민사소송

1) 법률사무소 '청지' 이성환 변호사 선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2004년 OO월 법률사무소 '청지' 이성환 변호사 선임 및 성매매 강요에 의해 생긴 질환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묻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 하였다.

2) 유언장 작성 및 업소 피해사실 녹음

2004년 OO월 상담원 입OO은 문OO의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 되어 감에 따라 유언장 작성 및 유언 녹음을 하게 되었다.센터 상담원 허OO과 변호사 박숙란이 문OO이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증인으로 입회하게 되었다. 문OO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정성을 쏟은 성OO에게 소송을 통해 받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유언장에 기재하였다.

3) 문OO 사망

문OO은 2005년 OO월 병마와 싸우다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본 센터 전 직원은 업주의 성매매강요에 의해 사망한 문OO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애도하였다.

4) OO법원에서 문OO의 유언증서 검인

센터 상담원 허OO과 변호사 박숙란은 2005년 OO월 OO지방법원에서 문OO의 유언에 따라 성OO을 위해 '문OO의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도와 법원으로부터 유언증서에 대하여 검인을 받게 되었다.

5)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사무소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문OO이 성매매강요에 의해 생긴 질환들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김OO

1) 2004년 OO월 117연계로 상담

김OO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업주의 보복을 피해 서울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고자 '117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본 상담소에 연계되었다.

2) 2004년 OO월 질환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

본 센터에서는 성매매와 부인과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하여 2004년 OO월 성매매피해여성 질환의 책임에 대한 집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3) 2004년 OO월 OO경찰서 사건의뢰

김OO의 피해사실을 상담한 본 센터 상담원 윤OO은 OO경찰서에 사건 의뢰하여 김OO의 피해사실을 진술토록 하였다.

4) 손해배상 소송제기

법률사무소 '청지' 이성환변호사는 김OO이 성매매강요에 의해 생긴 질환들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5) 형사고소 유보 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김OO은 막상 업주에 대한 처벌을 위해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업주의 잠적과 갖은 협박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 김OO은 현재 형사고소를 유보한 상태이며, 극심한 우울증상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김OO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자궁적출 수술'이 성매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5. 향후 지원계획

우리는 성매매피해여성이 앓고 있는 각종 질환의 책임이 업주의 성매매 강요와 치료방해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센터는 성매매가 여성의 인격과 생명을 짓밟는 심각한 폭력행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문OO처럼 희생될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조속히 정착되어 성매매 강요로 불법수익을 얻는 업주 등이 강력히 처벌받고, 우리 사회가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불법으로 규정된 성매매를 피치 못하게 지속해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구조에 경종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의 소송 진행상황을 알릴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의 성매매와의 상관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여성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리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질환책임에 대한 집단소송의 진행과정

이성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지')

1. 취지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환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진행 중인 사건의 개요

(1) OO지방법원(문OO의 진행과정)

- A집결지에서 약 3년간 일함
- 자궁경부암 말기
-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청구
- 소송 진행중 성매매피해여성 사망
- 업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처벌됨

(2) OO지방법원(김OO의 진행과정)

- B집결지에서 약 3년간 일함
- 자궁경부 상피내암, 자궁적출술 시행
-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청구

3. 청구원인

잡은 성관계를 강요하고,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 질환에 대한 책임
- (2) 성매매 강요 자체에 대한 책임

4. 업주측의 주장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이다.
- 보건소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왔다.
- 여러 업소를 전전하며 발병한 것이다.
- 성매매와 질환의 인과관계가 없다.

5. 쟁점

(1)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 질환과 성매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질환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신체감정, 진료기록, 산부인과학회의 의견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함.
(B집결지 사건의 경우 신체감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나, 감정 의사가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고, A집결지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

(2) 과실상계

- 업주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은 과실을 많이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3) 일실소득

-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성매매로 인한 수익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4)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 성매매 피해여성의 질환이 피고 업주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발병 또는 발견하였다고 하여 여러 업소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발병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적으로 피고 업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5)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청구내역 등

| 구분 | 집단소송 | |
|----------|--|--|
| | 문00씨 소송 | 김00씨 소송 |
| 소송 취지 | 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궁암 발기 상태에 이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 자궁적출에 이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원고 | 성매매 피해여성 1명 | 성매매 피해여성 1명 |
| 피고 | 성매매 업주 | 성매매 업주 |
| 소송 내용 | 손해배상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
| 참여 변호사 | - 법률사무소 청지 강지원 변호사 외 2인(주변호사: 이성환) -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 - 법률사무소 청지 강지원 변호사 외 2인(주변호사: 이성환) -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
| 손해배상 청구액 | 손해배상청구소송 - 2억9천9백5십만4천8백7원 (일실수익+치료비+개호비+위자료) | 손해배상청구소송 - 5천1백4십만원 (일실수익+치료비+개호비+위자료) |



지정발언

다시함께센터와 함께 한 1년

... 권정순 변호사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

... 서순성 변호사

VII. 지정발언

주제 : 다시함께센터와 함께 한 1년

권정순 변호사 (법률지원단)

1. 센터에 처음 상담을 나오면서

가. 상담원들과 센터를 찾은 내담자들을 만난 느낌

나. '나 스스로도, 성매매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깨우침

2. 구체적인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 유흥업소 업주들은, 법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 내담자들은 법적인 지식이 전무 할 뿐 아니라, 업주 등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

나. 내담자들에게는, 경찰서, 검사실뿐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 큰 고통 -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나 상담원들의 조사 참여가 필수

다. 몇몇 경찰관이나 판, 검사들은 내담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배려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조사관 및 판, 검사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인 시스템과 업주와 내담자들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임. -
업주와 내담자들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

3. 아쉬웠던 일들과 당부하고 싶은 사항

가. 내담자들의 소극적인 자세 및 당장 급한 일만 해결하고 나면 센터와의 연락
마저 두절하는 등의 태도

나. 상담원들은 반복된 상담과 조사 참여 등으로 심신이 지치기 쉬운 환경. 따라
서 끊임없는 재교육과 상담원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주제 :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

서순성 변호사 (법률지원단)

1. 변호사들이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에 소극적인 이유

가. 외적요인

- (1) 법률시장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
- (2) 사회적 편견 - 내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 (3) 남성중심주의
- (4) 사법당국의 소극적 태도
- (5) 법률지원단체와의 연계의 부족

나. 내적요인

- (1)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이중적 태도
- (2)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

2. 변호사들의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

가. 소송비용 등 지속적인 지원

나. 법률지원의 개발

민변 여성위원회, 공익변호사, 사법연수원, 법과대학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법률자
원개발

다. 상담소와 변호사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보

자원개발, 위촉장, 권한분장(상담소의 법률문제에 대한 실력배양을 통한 상담의 실질화), 지속적인 관계 유지

라. 법률지원단 체계화

각 지원센터는 법률지원 변호사와 지속적인 관계 모색,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센터 상호간의 공조체제 확보, 상담소 상담원에 대한 성매매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교육의 필요성(재교육 후 수수료증 부여)

마. 사법당국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각성

3. 산업형성매매의 근절방안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형벌 위하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나. 식품위생법, 건축법, 직업안정법 등 산업형 성매매업소를 규제할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다. 식품위생법, 건축법, 직업안정법, 풍속등영업에관한법률 등 성매매업소를 규제할 법률 위반 시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 및 처리결과 모니터